

제439회 국회
(정기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5일(화)

장소 성평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3)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1) | 5 |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3) | 5 |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 5 |
|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 5 |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 |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준구 행정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저희……

○위원장 김정재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김소희 위원 예.

○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구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아동법 개정안,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저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해당 법안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춘 단순한 자구 정리용 부수법안이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런 숙고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는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저는 사법 파탄의 위험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법률 체계에 그대로 전가하는 피해자 방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칠 파장을 단 한 번이라도 통계와 실태조사로 검증해 보셨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실제로 암장될 뻔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간에 사건 핑퐁하는 것은 예상되는 바이고 수사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돼서 가해자는 거리를 확보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방치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국회 성평등위가 현장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보완수사 폐지 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명백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안전망을 부수고 가해자에게 도주로를 열어 주는 이 참담한 입법 진행에 저는 단 1초도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전에 발언하신 김소희 위원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될 텐데요. 오늘 상정된 개정안 4건은 결국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검사가 수행

해 온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능을 축소·변경하고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갑자기 추가된 김남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폐지됐던 전건송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줄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뺄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교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 그다음에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빈틈을 메워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경찰 관계자의 유착 증거인멸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도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총 97건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20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줄속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김정재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이수진입니다.

지난 8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예 따라 정비가 필요한 후속 입법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에는 안건 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4건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정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법안입니다. 주장하신 내용을 담은 겁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간사님과 또 김소희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폭력 방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성평등가족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의 상정과 논의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 실시계획 채택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이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양쪽 의견 잘 들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된 것은 사실상 아니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반대하면서 다시 전면 살려 내라라고 하는 게 야당 주장이고 그중에 나머지 급하게 빠진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충분히 또 의견을 얘기했고요.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부활하지 않는 한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양당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정족수가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 오고 계신다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님이 와 주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19분)

○위원장 김정재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에 필요한 15일이 경과하지 못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와 연관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의 정비 또한 시급하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상의 법률안들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3)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4.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11시20분)

○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조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의사일정 제2항과 동일한 취지 및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항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경미한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위원 1인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제25조의11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23조, 25조, 26조, 27조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8조, 제31조, 38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빠르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축조심사를 마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잠시 뒤 의결 시에는 해당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1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 7조, 11조, 제3장 제목과 17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제18조, 19조, 23조, 24조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4조, 44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좀 간단한 거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다들 보고 오셔서 가지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비용추계서 첨부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6분)

○위원장 김정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대안)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김정재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77조와 제7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정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형사사법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형사법 제도 변경으로 인한 또 다른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와 제도 보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기국회 일정 중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민경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선영 김남근 김소희 김정재 박지혜 백혜련 손 솔 이수진 이연희 이주희
임종득 전은수 정춘생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정책기획관 김권영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23)

9월 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21)

9월 2일 회부됨

2027년도 예산안

(2026.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2)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3)

국무위원후보자(성평등가족부장관 용혜인) 인사청문요청안

(2026. 9. 3. 대통령 제출)

이상 3건 9월 4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3)

9월 7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이상 3건 9월 10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4)

이상 2건 9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미디어교육지원법안

(2026. 8. 27.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3)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장년기본법안

(2026. 8. 21.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9. 10.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98)

이상 2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7년도 예산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6.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 됨

○보고서 송부

202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6. 9. 1. 성평등가족부 제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6. 9. 1. 성평등가족부 제출)

이상 2건 9월 1일 송부 됨

202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6. 9. 3. 기획예산처 제출)

2026년 재정 관련 자료

(2026. 9. 3.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 9. 3. 정부 제출)

2026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2026. 9. 4. 기획예산처 제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6. 9. 4. 기획예산처 제출)

이상 5건 9월 4일 송부 됨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3668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9. 15.	시행령

○보고서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고(혼인지원금)

(2026. 9. 9. 성평등가족부 제출)

○통지

국무위원후보자(성평등가족부장관 용혜인) 인사청문요청안 철회에 대한 통지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철회한다는 통지가 있었음